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39 발의연월일: 2025. 1. 6.

발 의 자:유용원·최수진·강대식

성일종 · 강선영 · 김기웅

김용태 · 정성국 · 임종득

박수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서명하도록 하면서 필요한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의 수기 관리 방식은 관리의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하여 전자적 복무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, 휴가·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2제2항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, 휴가·결근, 지각·조퇴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 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78조제1항 중 "제31조의2제2항"을 "제31조의2제3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1조의2(사회복무요원 복무 관 제31조의2(사회복무요원 복무 관 리·감독 등) ① (생 략) 리·감독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②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, 휴가 • 결근, 지각·조퇴 등의 복무관 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・운 영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제78조(병무행정사무의 위임) ① 제78조(병무행정사무의 위임) ① 제20조, 제31조의2제2항, 제34 -----제31조의2제3항-----조의2제5항, 제70조제1항ㆍ제3 항, 제81조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 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 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② · 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